

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하남시장(세원관리과)

제출일 : 2026. 3.

1. 제안이유

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(행정안전부 예규 제346호 2025. 12. 10. 시행) 개정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(안)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금고지정 심의안건 대한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 신설(안 제6조의2)
- 나. 금고지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평가기준 교부·열람에 대한 재량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함
(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)
- 다. 금고 약정 금리 공개 및 공개 방법 신설(안 제12조제5항)
- 라.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시 행정안전부장관 보고사항을 사후 통보로 변경함
(안 제15조제3항)
- 마. 대출 및 예금금리와 지역사회 기여 실적 평가 방법 개선(안 별표)
 - 금고 지정 평가기준의 다른 평가항목 순위 간 편차에 적용되는 비율의 1/2을 적용하는 차등 적용 규정 삭제
- 바.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(안 별표)
- 사. 기타 용어 및 형식 등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유정수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및 행정안전부 예규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, 금고지정 절차와 평가기준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비하려는 것임.
- 특히,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을 신설하고, 제안서 제출 관련 공고·통지 및 평가기준 열람을 의무화하며, 금고 약정금리 공개와 협력사업비 공개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금고지정 과정의 객관성과 공개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판단됨.
- 검토 결과,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,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